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. 2. 24 선고 2020가단8427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2. 2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들에게,

가.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(ㄹ) 부분 73㎡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,

나. 위 가항 기재 대지를 인도하고,

다. 2020. 10. 21.부터 위 나항 기재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남세진

별지